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석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960
----------	------

발의연월일 : 2016. 11. 30.

발의자 : 권석창 · 이진복 · 박성중
권성동 · 장석춘 · 함진규
이명수 · 정유섭 · 문진국
김성원 · 최도자 · 이우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에 따르면 목표가격을 농업인등에게 변동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또한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두고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23조에서도 기금운영계획안 수립, 변경에 대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음.

이에 ‘쌀의 평균수확기 가격’을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에 대해 위치를 변경하여 위원회

의 상정안건과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6조 및 제23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평균 수확기 가격”을 “수확기 평균가격”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쌀의 수확기와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을 “수확기 평균가격 변동을”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 략)</p> <p>4. “목표가격”이란 농업인등에게 변동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쌀의 <u>평균 수확기 가격</u>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후단 신설></p> <p>5. ~ 7. (생 략)</p> <p>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p> <p>① · ② (생 략)</p> <p>③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목표가격은 쌀의 <u>평균 수확기 가격변동</u>을 고려하여 정하되, 그 목표가격의 산정 방법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p>	<p>제2조(정의) -----</p> <p>-----.</p> <p>1. ~ 3. (현행과 같음)</p> <p>4. -----</p> <p>-----</p> <p>----- <u>수확기 평균 가격</u></p> <p>-----</p> <p>-----</p> <p>----- . <u>이 경 우 쌀의 수확기와 평균가격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u></p> <p>5. ~ 7. (현행과 같음)</p> <p>제11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 <u>수확기 평균가격변동을</u></p> <p>-----</p> <p>-----</p> <p>-----</p> <p>----- .</p> <p>제16조(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4. · 5. (생 략)</p> <p>제23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p> <p>① (생 략)</p> <p>② <u>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거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면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u></p>	<p>②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제23조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안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23조(기금운용계획안 수립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	--